



제387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7547호)

2021. 5.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자치분권 시범실시 지방자치단체 지원	3
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이관	5
3. 자치분권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해식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1. 1. 21.
3. 회부연월일 : 2021.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전문적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또한,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자치분권 시범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차등적 맞춤형 분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아울러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자치분권위원회의 존속기간(5년)을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의 총괄·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함(안 제 45조 등).

Ⅲ. 검토의견

1. 자치분권 시범실시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자치분권 시범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10. (생략) <u><신설></u> <u>11.</u> (생략)	제45조(기능)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제10조에 따라 자치분권정책 시범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u> <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자치분권 시범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시범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근거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은 자치분권정책의 안정적 실시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정책 시범 실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

1)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직접 참여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처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이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10. (생략) <u><신설></u> <u>11. (생략)</u> <u><신설></u>	제45조(기능)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생략)</u> <u>12. (현행 제11호와 같음)</u> <u>13.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지방재정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하는 사항</u> <u>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하는 사항</u> <u>다.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하는 사항</u> <u>라.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u>

현행	개정안
12. (생략) <신설>	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하는 사항 마.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 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 전부장관이 제출하는 사항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 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자치분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46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제45조제1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심 의위원회(이하 “부담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부담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 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 간위원으로 하되, 부담심의위원회에 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현행	개정안
	2. <u>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u> 3. <u>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⑤ <u>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u> 1. <u>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u> 2. <u>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u> ⑥ <u>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의결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u> ⑦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의결 사항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u>

의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재정법」²⁾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이 법에 담으려는 것임.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³⁾이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

2)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 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이관되면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등의 관점에서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만,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 형식이 아닌 별도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것은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국고보조율 조정 등 국가와 지방의 재원분담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의 과정에서 국가재정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 심의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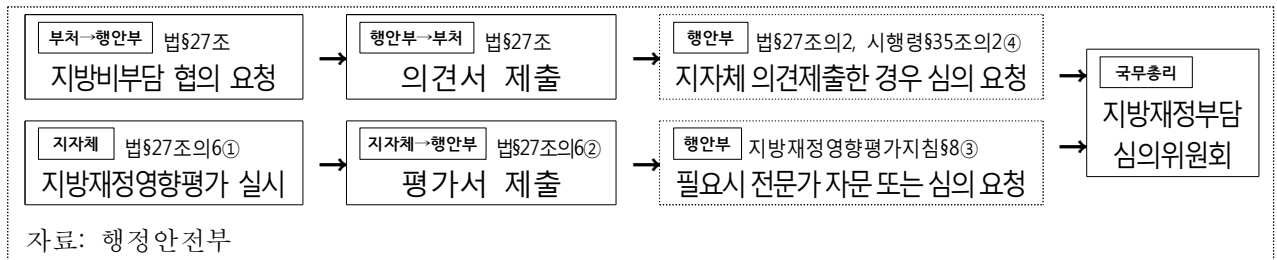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등 국가와 지방의 재정분담 관련 결정을 자치분권위원회의 역할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4) 현행법 상 위원회별 위원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성격상 독립된 위원회의 설치는 어려우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이관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다른 지방재정 관련 제도와 유기적 연계·운영에 한계가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간 연계>



3. 자치분권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한 부칙을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550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u>제2조(위원회 존속기간)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u>	법률 제1550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u><삭 제></u>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한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자치분권위원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존치하여 운영하려는 취지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⁵⁾,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자치분권위원회를 계속 존치할 명백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겠음.

참고로, 자치분권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1999.1.29.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자치분권위원회’가 운 영 중에 있음6).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 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자문위원회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 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 원회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설명하는 위원회 연혁은 다음과 같음.

1999.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업무 추진
2003.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분권 로드맵 수립 등 총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사무이양 심의 등 추진
2008.12.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 추진
2013.9.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한 ‘지방자 치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2017.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자치분권위원 회’를 명칭으로 함.

문 의 처
02)6788-5337